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7. 23 선고 2019가단8612(본소), 2019가단27712(반소) 판결
[공사금 과다청구 · 공사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피고(반소원고)B

변론 종결 2020. 6. 11.

판결 선고 2020. 7.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피고)에게 48,08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구취지

본 소 청 구 취 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4,884,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 소 청 구 취 지

원고는 피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2018. 4. 30.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관광호텔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95,0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원, 공사기간 2018. 11. 1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아 공사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청구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정산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으로 163,076,500원이 소요되었으나 53,076,500원은 삭감하고 1억 1,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원고가 7,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9. 2. 1.부터 2019. 3. 15.까지 4,400만 원을 송금해주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철물자재 대금 1,066만 원을 대납해 주었다. 기존에 원고가 공사비로 411,210,000원을 지급한 것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734,520원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다.

한편, 피고가 인부들에게 노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미지급 임금 28,917,500원을 지급하였고,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관하여 변호사 비용 232,600원을 부담하였으며, 형사 처벌을 받아 벌금 500만 원까지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34,844,620원(= 734,520원+28,917,500원 + 232,600원+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9. 1. 28. 추가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533,996,5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리하되 그때까지 지급된 공사대금 370,920,000원에 철물자재 대금 53,076,5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잔여 공사대금을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 31.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 7,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2019. 3. 31.까지, 3,000만 원은 그 후 지급받기로 하여 각서(을 제5호증)를 교부받았다.

피고는 위 정산합의와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400만 원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약정한 잔여 공사대금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지급하지 아니하는바 그 이행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공사비 정산액

갑 제8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원고에게 증가된 물량 등을 반영하면 전체 공사비가 533,996,5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되어 미지급 공사비가 163,076,500원이 되는데, 여기서 철물자재 대금 53,076,500원을 차감하여 추가 공사비로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요청하는 내용의 정산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9. 2. 1. 4,000만 원, 2019. 2. 22. 300만 원, 2019. 3. 15. 1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19. 1. 31.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지급함에 있어 1차 4,000만 원을 2019. 3. 31. 지급하고, 2차 3,000만 원을 지급완료 하겠음'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제시한 정산내역과 원고가 작성한 각서의 기재 내용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송금일시와 송금액 등을 일관되게 정리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증가된

물량을 반영하고 철물자재 대금 등을 공제하여 전체 추가 공사비로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그 중 4,000만 원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400만 원만 지급하였고 각서에 기재한 7,000만 원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나. 공제할 금액

1) 대납한 임금 등의 공제 갑 제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였고, 이에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원고가 미지급 임금 등 28,917,5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금원은 본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공사비에서 지급될 금원이므로, 원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등 지급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 232,600원과 형사 처벌에 따른 벌금 500만 원은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으로서 자신의 지위와 책임에 따라 부담한 비용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결과일 뿐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전가시킴은 정당하지 아니한바 이를 원고가 미지급한 공사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철물자재 대금 공제 여부 원고는 2018년 5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철물자재 대금 합계 10,660,52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이를 미지급 공사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2019년 1월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정산하면서 추가 증가된 물량을 반영하고 철물자재 대금 53,076,500원을 공제하여 전체 추가 공사비로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정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주장하는 철물자재 대금은 이미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모두 공사비의 차감 요소로 반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행의무의 범위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미지급 공사비로 48,082,500원(= 7,700만 원-28,91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9.

2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금원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태균